

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제909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5. 17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5. 18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5. 5. 25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”이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2005.1.14)됨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“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”를 “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”로 변경함(안 조례제명)
- 나.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,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4조)
- 다. 위원의 임기사항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구체화함.(안제5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자로 「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

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 등의 심의를 위하여 기존의 “토지평가위원회”를 승계하여 “부동산 평가위원회”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여 신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또한 위원의 자격을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자와 감정평가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과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으며, 위원의 임기조항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5. 5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